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위한 기업인 전용카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개요

- APEC 회원국간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조치로서, 기업인에게 별도의 입국 VISA 없이 공항내의 전용 수속레인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
- 한국무역협회가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아 카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수행



### ABTC 특전

-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 출입국 가능
- 국제공항의 ABTC 전용레인(Fast Track)으로 신속한 수속



### 카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신청)
- 승인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한 국가 6개국 :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 \* 상기 6개국의 VISA만료일은 이메일(abtc@kita.net)로 문의하여야 함  
(상세내용 기재 : 회사명, 무역업고유번호, 카드명이자, 시스템번호(or 카드번호), 담당자 연락처)
- 해외 승인 유효기간은 신청인 여권만료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ABTC신청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 요망



### 입국시 최장 체류기간

59일	60일	90일
필리핀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러시아는 연간, 180일을 넘길 수 없음)

\* 미국·캐나다 입국시 별도 비자 필요함(국제공항 전용레인 이용은 가능)



### 출국시 인천공항 패스트트랙(Fast Track) 이용안내

- 대상시설: Fast Track 전용출국장(1번, 6번 출국장), 2번~5번 출국장: 측문 이용가능
- Fast Track 이용시간: 오전 7시 ~ 오후 7시(12시간)      - 2번~5번 출국장: 각 출국장 운영시간
- 대상자: ABTC 소지자 (동반 3인) 이용가능 (회원국에서 사용시에는 ABTC 소지자 본인만 가능함)
-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 공항이용안내 > 출국 > 보안검색 <http://www.airport.kr/pa/ko/d/2/2/4/index.jsp?tabIndex=1>



### ABTC 승인국가 코드표

- 카드 뒷면의 “Valid For Travel To:”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사용
- 국가 코드표(19개국)

AUS	오스트레일리아	BRN	브루나이	CHL	칠레	CHN	중국	HKG	홍콩
IDN	인도네시아	JPN	일본	KOR	한국	MEX	멕시코	MYS	말레이시아
NZL	뉴질랜드	PER	페루	PHL	필리핀	PNG	파푸아뉴기니	RUS	러시아
SGP	싱가포르	THA	태국	TWN	대만	VNM	베트남		



### 카드 유효기간 및 개인자격요건

#### ▣ 카드 유효기간

- 카드 재발급(승인국 추가, 분실, 훼손, 여권변경\* 등)의 경우 유효기간
  - \* 여권변경 : 카드 발급 신청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부여(단,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 맨 처음 발급 카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잔여 유효기간)

#### ▣ 개인자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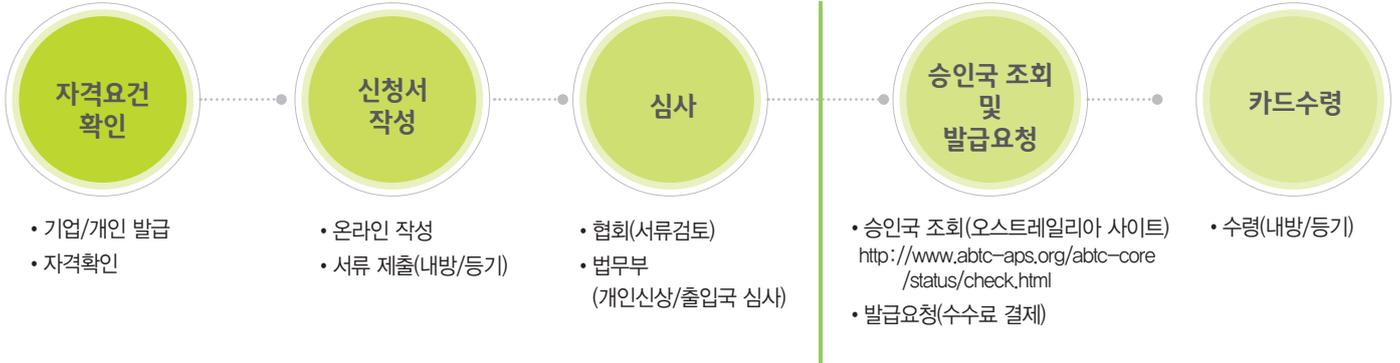
- 한국 국적으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외국인거소증으로만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출입국(APEC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 4조 (출국의금지)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
- 카드발급 대상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 형 실효법에 따라 범죄경력 없는 사람(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제출)

## 카드 발급 절차 안내

ABTC 신청안내 홈페이지 • <http://abtc.kita.net> • [abtc@kita.net](mailto:abtc@kita.net)

문의사항 :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우편접수 주소 안내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층 (우 06164)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ABTC 담당자 앞



## ABTC 발급 신청 종류 구분

구분	신규/교체 신청	(카드)재발급 신청	취소/반납 신청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신청자</li> <li>• 교체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카드 소지자)</li> <li>* 기한 만료카드는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시 패널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실</li> <li>• 여권교체</li> <li>• 훼손</li> <li>• 승인국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납</li> <li>• 분실</li> <li>• 취소</li> </ul>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내방/등기)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제출(내방/등기)	온라인 신청 후 카드 반납(내방/등기)
신청서류	<p><b>기업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의뢰서(온라인 등록 후 인쇄), 인감날인</li> <li>• 신청자 명단 및 재직정보확인서(온라인 등록 후 인쇄) 인감날인</li> <li>• 소지자 명단(온라인 인쇄)</li> <li>•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최근 2개월 이내)</li> <li>• 신청자격 확인용 증빙 서류</li> <l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한달전), 인감날인</li> </ul> <p><b>개인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신청서</li> <li>•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li> <li>•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li> <li>• 서약서, 인감날인</li> <li>•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발급용도: 외국 입국·체류허가용)</li> </ul>	<p><b>개인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발급신청서(인감날인)</li> <li>• 재직증명서(주민등록 후단번호제외)</li> <li>• 여권사본(주민번호 후단번호삭제)</li> <li>• 카드 반납(분실 신청시 제외)</li> </ul>	<p><b>카드 반납(카드보유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 만료: 카드만 반납</li> <li>•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개인신상정보 변경시: 반납요청 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li> <li>•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반납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하고 카드를 반납</li> </ul> <p><b>카드 분실 취소(카드분실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취소 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li> </ul> <p><b>카드 발급 전 취소(카드미발급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자가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카드발급 취소요청공문을 온라인 제출</li> </ul>
비고	<p>카드사용 : 교체신청후 소지하고 계신 카드 뒷면에 찍힌 여권번호와 현재 사용 중인 여권번호가 일치하고, 승인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교체 신청 후에도 계속 이용 가능 함</p> <p>* 인감은 법인, 사용 인감 모두 가능(단, 모든 서류에 동일한 인감으로 통일할 것)</p>	카드 신청자가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경우, 카드 효력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사 및 계열사 이동시 카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2조 ① 2항]</li> <li>• 카드를 미반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시 카드 발급 신청이 3년동안 제한이 가능하므로 카드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훈령 제 598호 제13조 5항]</li> </ul>

## ABTC 카드 관리시 유의사항

- 효력 상실시 카드 즉시 반납 (\* 소속기업의 파산, 퇴직, 해임, 계열사로 이동, 유효기간 만료 등)
- 여권 재발급, 승인국 추가, 훼손 등의 경우 카드 반납 후 재발급 신청
-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고 카드 재발급 신청
- 유효기간 만료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 교체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

\*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2회 이상 카드 분실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제한이 가능 [법무부 훈령 제598호 제13조 5항]